

주민등록증
이 (李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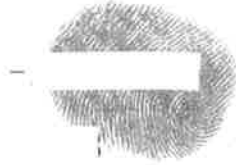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

2011. 6. 9.
경기도 용인시장



권리양도각서

양도인: 이 ([Redacted])
경기 용인시 수지구



양수인: 양 ([Redacted])
서울 동대문구 장안동



이 이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(대표이사 권오수,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동 530-19)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권오수에게 가지는 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 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다 음

1. 양도 대상 권리

가. 양도인과 위 권오수 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입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권오수에게 가지는 계약상 권리(손해배상 포함) 등 일체의 채권.

나. 단 양도인이 위 권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증하지는 아니한다.

2. 권리의 실행

가. 본 계약 체결 후에도 양도인은 양도 대상 권리에 관하여 권오수와의 협상 및 합의권이 있다.

나. 양도인이 권오수로부터 취득하는 본 건 권리와 관한 일체의 금전적 이득은 양수인에게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.

3. 비밀유지의무

양 당사자는 본 합의서상의 약정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, 이를 위반한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.

4. 합의관할

본 합의서상의 효력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전속적 관할로 한다.

2012. 5. 8.